

의안번호	제3099호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(변경)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6. 4. 24.

#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(변경)

의안 번호	제3099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6. 4. 24.

제출자: 고성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제306회 고성군의회(제2차 정례회) 2025. 12. 8. 원안 가결된 「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(변경)」과 관련
- 나. 고성군 해양치유센터의 효율적·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함

## 2. 위탁근거

- 가. 「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(위탁운영)
- 나.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, 제5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, 제6조(군의회 동의 및 보고)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: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
- 나. 위탁대상: 고성군 해양치유센터
  - 1) 위 치: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(자란도) 108번지 일원
  - 2) 연 면 적: 6,080.95㎡(대지면적 19,385.00㎡)
  - 3) 시설규모: 1개동(지하 1층, 지상 3층)
    - 지하 1층: 기계실, 전기실
    - 1층: 세탁실, 검사실, 상담실, 탈의실, 샤워실, 1종 근린생활시설, 린넨창고, 식당 등
    - 2층: 치유실(숙박), 마인드풀, 탄산풀, 개별치유실, 다목적풀, 패각찜질실, 소금찜질실, 피트니스 등
    - 3층: 치유실(숙박), 요가/명상실, 사무실, 회의실, 공유오피스, 다목적홀, 강의실 등

#### 4) 위치도



다. 위탁기간: 3년(2026. 10. ~ 2028. 9.)(변경)

- (당초)위탁일로부터 2년 11개월 → (변경)위탁일로부터 3년

- 변경사유: 위탁운영비 정산 등의 회계처리 편의 및 정확도 제고

라. 위탁방법: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

마. 위탁사무 내용: 해양치유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

-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·개발 지원

- 해양치유센터 시설 내·외부 유지 관리 지원

- 주요 치유시설, 숙박시설, 식당, 공유오피스, 편의시설 등의 운영

바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해양치유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산업 형태로서 경영·서비스 분야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됨

- 보직순환을 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사업수익 및 센터 활성화 등의 안정적 운영·관리가 어려움

- 해양치유센터의 운영은 전문 기업·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시행하되, 해양치유 프로그램 및 제품개발, 시설물 관리는 고성군에서 시행

## 사. 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(변경)

### 1) 변경내역

(단위: 천원)

구분	당초	변경	비고
소요예산	837,250천원	1,000,000천원 / 년	
정산방법	상계처리 원칙, 최초 1년간 손실액 조건부 보전	상계처리 원칙 (전문업체 검토 후 타당성 인정시)	

- 변경사유: 해양치유센터의 매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, 위탁운영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, 시설의 지속적·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손실보전금 일부(1,000백만 원 이내/년)를 예산 지원

### 2) 위탁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: 천 원)

연도별	2026년(Y)	2027년(Y+1)	2028년(Y+2)	비고
	1~12개월	13~24개월	25~36개월	
당초	837,250	-	-	최초 1년 지원
변경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

### 3) 산출근거: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용역(2025)

- 운영원가 상세내역(2026년 소요예산 기준)

구분	금액(원)	비고	
<b>총계</b>	<b>3,103,197,418</b>	<b>수탁자 운영비 + 군 부담분</b>	
인건비	1,176,776,683	▲25명 기준	
운영비	복리후생비	149,900,000	▲25명 기준
	보험료	112,754,145	▲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
	교육훈련비	36,377,333	▲직무교육, CS교육
	통신비, 세금과공과	29,925,842	
	임차료, 유류비	200,356,400	▲선박, 차량(1톤 트럭) 등 임차비
	수리수선비	25,958,151	▲소규모 수선비
	소모품비	230,365,843	▲객실, 프로그램실, 화장실 등 운영물품 구입
	사무용품비	6,022,152	
	홍보비	30,128,386	▲ 홍보물품 구입 및 홍보업무 추진
	기타경비	174,231,455	▲ 카드기맹점 수수료, 청소용역 등
순원가(인건비+운영비)	2,172,796,390		
일반관리비	5%	108,639,820	▲ 순원가의 5%
이윤	7%	159,700,535	▲ 순원가 + 일반관리비의 7%
운영원가(순원가+일반관리비+이윤)		2,441,136,744	
부가가치세	10%	244,113,674	▲운영원가의 10%
<b>소계(운영원가+부가가치세)</b>	<b>2,685,250,418</b>	<b>※ 수탁자 운영비</b>	

2026년 예산 편성 (군부 담)	지급수수료(유지보수)	42,200,000	※ 2026년 당초예산 편성내역 ▲ 초기 전문인력 기술교육(4개월): 1억원 ▲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(8개월분): 28억원
	초기교육비	100,000,000	
	전력비	233,739,000	
	수도광열비	42,008,000	
	소계	417,947,000	

※ 가동률에 따른 운영수지추정

(단위: 천 원)

가동률	테라피 이용수입		롱텀케어센터		연간매출 (a)	연간비용 (b)	운영수지 (a-b)	비고
	자유의바다	고성의바다	2인실	4인실				
100%	1,781,200	1,781,200	2,690,050	489,100	6,741,550	3,186,413	3,555,137	
47.3%	841,889	841,889	1,013,535	489,100	3,186,413	3,186,413	손익분기점	
<b>27.4%</b>	<b>488,264</b>	<b>488,264</b>	<b>382,372</b>	<b>489,100</b>	<b>1,848,000</b>	<b>3,186,413</b>	<b>△1,338,413</b>	<b>당초</b>
<b>25%</b>	<b>445,300</b>	<b>445,300</b>	<b>672,513</b>	<b>122,275</b>	<b>1,685,388</b>	<b>3,186,413</b>	<b>△1,501,026</b>	<b>변경</b>
20%	356,240	356,240	146,730	489,100	1,348,310	3,186,413	△1,838,103	

아. 위탁의 적정성 검토: 적정

검토항목	검토내용
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해양치유와 관련한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로, 사적 수익을 위한 사용 수익허가나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보조사업과는 성격을 달리함</li> <li>▲ 직영 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력 확보가 어려우며, 보직순환 등으로 안정적인 운영·관리가 어려움</li> </ul>
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관련 조례에 따른 요금 책정 및 운영으로 공공성이 확보</li> <li>▲ 공익적 측면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기관 선정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안정성 확보</li> <li>▲ 해양치유센터 종합경영관리 매뉴얼 개발 용역 시행으로 일관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</li> </ul>
③ 경제적 효율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직영 시 추가 (전문)전담인력 채용으로 인한 정원 증원 및 추가 예산 확보 등 행정의 부담 가중</li> <li>▲ 민간위탁 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동률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가능</li> </ul>
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해양치유 분야의 전문성 및 시설 운영 경험을 통한 시설 활성화 유도 및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</li> </ul>
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이용객 수, 예약 건수, 운영수익 등의 지표를 활용한 정량적 성과 측정 가능</li> </ul>
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공무원 인력(1팀, 5명)을 함께 배치하여 지도감독 및 행정업무 지원을 통한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</li> </ul>
⑦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해양치유산업은 신사업으로, 해수부에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5개 지자체(고성, 완도, 태안, 울진, 제주)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</li> <li>▲ 이후 해양치유의 저변 확산과 다양한 해양치유사업 모델 개발로 관광 사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</li> </ul>

4. 추진경과 및 일정

- 가. 2026. 4. ~ 5.: 해양치유센터 운영 위탁 사업자 공모
- 나. 2026. 5.: 해양치유센터 운영 위탁 군의회 변경 동의안 제출
- 다. 2026. 6.: 사업자 확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
- 라. 2026. 7. ~ 10.: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인력채용(수탁자)

- 붙임 1.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변경 추진 계획 1부.  
 2. 관련 법령 1부. 끝.

#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변경 추진계획

- 고성군 해양치유센터의 효율적·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기간 및 소요예산을 다음과 같이 민간위탁 변경 추진하고자 함.

## I 추진경과

- 제305회 고성군의회 위탁동의안 제출
  - 의결일자: 2025. 11. 13.
  - 의결내용: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운영방식 변경
  - 위탁기간: 2년 11개월(2026. 2. ~ 2028. 12.)
  - 지원방법: 상계처리 원칙(최초 1년간 손실액 조건부 보전)

연도	2026년	2027년	2028년	비고
소요예산	837,250	-	-	최초 1년 지원

- 결과: 원안가결

## II 민간위탁 변경계획

- 문제점 및 검토사항
  -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운영자 공개모집(1, 2차)시 참여자 부재
  - 최초 1년에 한하여 예산지원 가능하다는 조건부 위탁계약 추진시,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민간위탁 운영자 참여 유도 어려움
  - ⇒ 신규시설인 고성해양치유센터의 매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, 지속적·안정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조건(기간 및 예산부문) 재설정 필요

### ○ 주요 변경사항

구분	당초	변경
위탁기간	2년 11개월(2026. 2. ~ 2028. 12.)	3년(2026. 10. ~ 2029. 9.)
위탁기간 내 소요예산	837,250천원 / 최초 1년 지원	1,000,000천원 / 매년 지원
지원방법	상계처리 원칙 (최초 1년간 손실액 조건부 보전)	상계처리 원칙 (전문업체 검토 후 타당성 인정시)

- 위탁기간 변경: 운영비 정산 등의 회계처리 편의 및 정확도 제고
- 위탁기간 내 소요예산 변경: 시설의 지속적·안정적 운영 도모

### III 소요예산 산출 근거

○ 소요예산: 3,000백만 원(3년간)

※ 상계방식 운영원칙/해양치유센터의 매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, 전문업체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, 손실보전금 일부(1,000백만 원 이내)를 예산 지원

○ 위탁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: 천 원)

연도별	합계	2026년	2027년	2028년	비고
당초	837,250	837,250	-	-	최초 1년 지원
변경	3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

○ 소요예산 산출내역

(단위: 천 원)

위탁운영비(a)	예상매출(b)	추정 적자액(a-b)	비고(완도사례)
(군 예산 편성분 제외) 2,685	(가동률 25%) 1,685	1,000	매출액: 1,697백만원/2024년 개관일: 2023. 11. 24.

○ 운영원가 상세내역(2026년 소요예산 기준)

구분	금액(원)	비고	
<b>총계</b>	<b>3,103,197,418</b>	<b>수탁자 운영비 + 군 부담분</b>	
인건비	1,176,776,683	▲25명 기준	
운영비	복리후생비	149,900,000	▲25명 기준
	보험료	112,754,145	▲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
	교육훈련비	36,377,333	▲직무교육, CS교육
	통신비, 세금과공과	29,925,842	
	임차료, 유류비	200,356,400	▲선박, 차량(1톤 트럭) 등 임차비
	수리수선비	25,958,151	▲소규모 수선비
	소모품비	230,365,843	▲객실, 프로그램실, 화장실 등 운영물품 구입
	사무용품비	6,022,152	
	홍보비	30,128,386	▲ 홍보물품 구입 및 홍보업무 추진
기타경비	174,231,455	▲ 카드기맹점 수수료, 청소용역 등	
순원가(인건비+운영비)	2,172,796,390		
일반관리비	5%	108,639,820	▲ 순원가의 5%
이윤	7%	159,700,535	▲ 순원가 + 일반관리비의 7%
운영원가(순원가+일반관리비+이윤)		2,441,136,744	
부가가치세	10%	244,113,674	▲ 운영원가의 10%
<b>소계(운영원가+부가가치세)</b>		<b>2,685,250,418</b>	<b>※ 수탁자 운영비</b>
2026년 예산 편성 (군부담)	지급수수료(유지보수)	42,200,000	※ 2026년 당초예산 편성내역 ▲ 초기 전문인력 기술교육(4개월): 1억원 ▲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(8개월분): 28억원
	초기교육비	100,000,000	
	전력비	233,739,000	
	수도광열비	42,008,000	
	소계	417,947,000	

- (참고) 가동률에 따른 운영수지

(단위: 천 원)

가동률	테라피 이용수입		롱텀케어센터		연간매출 (a)	연간비용 (b)	운영수지 (a-b)	비고
	자유의바다	고성의바다	2인실	4인실				
100%	1,781,200	1,781,200	2,690,050	489,100	6,741,550	3,186,413	3,555,137	
47.3%	841,889	841,889	1,013,535	489,100	3,186,413	3,186,413	손익분기점	
27.4%	488,264	488,264	382,372	489,100	1,848,000	3,186,413	△1,338,413	당초
25%	445,300	445,300	672,513	122,275	1,685,388	3,186,413	△1,501,026	변경
20%	356,240	356,240	146,730	489,100	1,348,310	3,186,413	△1,838,103	

## IV 수탁자 선정계획

### □ 수탁자 공개모집 개요

#### ○ 추진일정(예정)

수탁자 모집 공고	⇒	수탁 제안서 접수	⇒	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구성	⇒	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개최	⇒	위·수탁 계약 체결
2026. 4.		2026. 5.		2026. 5.		2026. 5.		2026. 6.

#### ○ 신청자격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
-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관광숙박업(①호텔업, ②휴양 콘도미니엄업) 또는 웰니스 시설(③스파, ④테라피, ⑤피트니스) 중 1개 이상 업종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·단체

※ 책임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은 불가

#### ○ 1개 단체(법인)의 단독 신청 시 모집 재공고

- ※ 재공고 시 1개 단체(법인)만 신청할 경우, 평가점수(정량+정성+가격) 70점 이상 획득 시 수탁자로 선정

## □ 수탁자 선정계획

-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
  -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9조
  - 구성인원: 7인 이상 10명 이내(위원장: 부군수, 부위원장: 호선)
- 심사위원회 개최(예정): 2026. 5.
- 심사기준
  -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개의
  - 평가방법: 제안사의 제안내용을 토대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
  - 평가항목 및 배점

구분	심사항목	배점
정량적 평가 (40점)	1.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 [기업신용평가서 포함]	5
	2. 동종/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[실적증명서 포함/해당기관 확인증명 필수]	25
	3. (팀장 이상)인력 투입현황 [재직증명서/경력증명 포함]	10
정성적 평가 (60점)	4. 사업내용 분석 및 이해의 충실도, 비전 및 운영 목표	10
	5. 인력 채용 및 배치 등 관리 계획의 적합성 (인력 확보 방안 및 직원 복리후생 등 지원계획)	10
	6. 프로그램 및 서비스 운영계획의 적합성 (운영방안, 고객관리, 안전관리 방안 등)	10
	7.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제고방안	10
	8. 예산의 합리적 운영방안	10
	9. 창의적 아이디어의 도입 및 추가제안	10
총 점		100

## V 향후계획

- 운영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 2026.05.
- 고성해양치유센터 시범운영 2026.10.
- 고성해양치유센터 정식운영 2026.12.“끝”

**□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**

제10조(위탁운영) ① 군수는 해양관광시설의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관광시설의 운영·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양관광시설의 운영·관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해양관광시설의 운영·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□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**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<개정 2022.12.27. 조2767>

1.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2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3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

제5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

8.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군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고성군의회(이하 “군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
2. 청소, 방호, 청사관리, 검침, 주차시설, 차량 운행 등 연간 반복적 단순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

2.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(이하 “재계약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

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민간위탁 사무명
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3. 민간위탁 사무 내용

4. 민간위탁 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5. 민간위탁 기간

6. 수탁기관 선정방식

7. 위탁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<개정 2022.12.27. 조2767>

8.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9.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

④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중요내용(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,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, 예산의 20퍼센트 이상 변경,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과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)이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군의회에 보고하거나 예산의 의결을 받으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<신설 2022.12.27. 조2767>